

버섯류 등 “표준규격품” 출하 판매 시
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
“세척 또는 가열” 등 안전문구 표시를
의무화하였습니다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-16호
 (2020.10.14.개정)



예시

“세척 후 드세요”

표준규격품	품목	사과	공급처	
	품명	홍옥	생산자	홍길동 (☎054-000-0001)
	등급	특 상·보통	무게	10kg
	무게	10kg	개수	14
	산지	국내산		

• 포장재치수 : 440×330×260 • 포장재중량 : 1,350g ± 5% • 제조회사 : 농협포장

“안전문구 표시”
 꼭 해야 합니다!

’21.10.14.부터

“버섯류, 과실·채소류, 신선편이농산물”을
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려면
안전문구를
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


“표준규격품”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내용

버섯류

팽이, 새송이, 양송이, 느타리버섯

“가열 조리하여 드세요.” 또는 “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,
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.”

* 생표고버섯, 송이, 생꽃송이, 생목이 버섯, 생고사리 등은
“임산물 표준규격” 의무표시 적용



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·채소류

사과, 포도, 금감, 단감, 자두, 블루베리, 앵두,
양앵두(버찌), 고추, 오이, 토마토, 방울토마토,
송이토마토, 딸기, 피망, 파프리카, 브로콜리

“세척 후 드세요.”



신선편이 농산물

세척, 박피, 다듬기,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·
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, 서류 및 버섯류

“세척 후 드세요.” 또는
“가열 조리하여 드세요.”



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표시 Q&A



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 무엇인가요?

•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로 **포장규격과 등급규격** 기준을 준수하고,
포장재 겉면에 “표준규격품”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.

※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의무표시사항

- ① “표준규격품”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
- ⑦ 생산자(생산자단체) 명칭 및 전화번호 ⑧ **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(신설)**

2 모든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해야 하나요?

•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, 유통효율 제고 등을 위해 표준규격 출하를 권장하고 있으며,
의무적으로 표준규격품을 출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3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• **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**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껍질을 벗겨 먹는
품목(파인애플, 감귤, 수박 등), 씻어서 먹는 품목(고구마, 복숭아, 당근 등)은 제외하였습니다.

4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도 안전 문구 표시를 해야 하나요?

• 세척 사과, 세척 당근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**세척, 포장, 운송, 보관된 농산물**에 대해서는
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5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포장재는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?

• 기존에 사용 중인 표준규격품 포장재에는 **“안전문구 스티커”**를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,
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**“표준규격품” 문구를 삭제**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6 안전문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• 표준규격품의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하면 1차 **시정명령**, 2차 **표시정지 1개월**, 3차 **표시정지 3개월**
행정처분되며,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**과태료 100만원**이 부과됩니다.